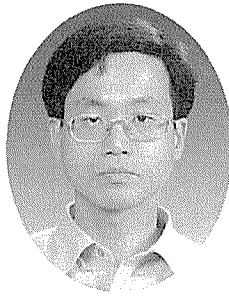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의 개편취지와 내용



이 운 호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서기관 〉

1. 머리말

정부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석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금번의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 개선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작업의 틀 속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분야에서도 경쟁을 통하여 검사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 품질관리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 현황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석유품질관리제도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의무의 부과와 품질유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석유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 석유사업자에 대하여는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의 판매·인도·저장·수송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유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제25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석유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인도·저장·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검사는 석유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자 등에 대하여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전에 실시하는 출하전 검사(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검사)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유통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통단계 검사(제25조제2항에 의한 검사)로 나뉘어 진다.

출하전 검사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한 의무적 검사로 검사대상 유종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용제, 윤활유 및 아스팔트(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이며,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98년중 수수료의 총수입은 85억원이

었으며, 징수된 수수료는 출하전 검사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검사를 포함하여 전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유통단계검사는 석유제품의 품질유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불량 및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차원의 수시검사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품질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품질검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권한을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하고 있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시·도지사는 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수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98년중 석유품질검사소는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50,204건의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출하전 검사가 1,918건,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단계 검사가 48,286건으로 유통단계검사가 전체검사건의 96.2%를 차지하였다. 검사결과 불합격 건수가 235건으로 97년 대비 32.0% 증가하였으며, 검사건수 대비 불합격율이 97년의 0.37%에서 0.47%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교통세 등 석유류 세금의 인상에 따라 세금포탈 목적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건수	불합격 건수		불합격 내용	
		비중(%)	유사	품질미달	
96년	45,019	104	0.23	92	12
97년	47,566	178	0.37	103	75
98년	50,204	235	0.47	154	81

3. 품질검사제도 개편방안

가. 추진배경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의 개편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쟁제한적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제26차 위원회('99.3.26)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업무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독점되어 있어 검사서비스의 질 향상 유인이 부족하고,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입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충분한 자체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강제적 품질검사는 실익이 적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를 허용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대규모 석유정제업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자체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석유사업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관전 검사에서 통관후 유통전 검사로 전환할 것도 요구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여 기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석유품질검사소는 전국적인 품질검사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유통단속업무의 성격상 품질검사를 여러 기관이 나누어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는 못하였다.

나. 품질검사제도 개편의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여 출하전 검사에 대하여 검사기관이 복수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석유제품을 판매·인도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품질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시설 및 인력 등 일정한 지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의 방법으로는 현행처럼 출하전 검사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이를 복수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수행하는 유통단계검사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출하전 검사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일정한 검사능력을 갖춘 모든 기관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유통단계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검사기관들중 산업자원부장관이 특정기관을 선택하여 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한 품질검사를 자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해서만 자체검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자체검사를 허용할 경우 수출입업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수출입업자도 자체검사의 허용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 및 자체검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자체검사의 승인 등과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이나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정유사 등이 품질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지정 또는 승인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이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사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관 등이 책임있게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정 및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4. 품질검사제도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검사기관의 복수화에 따른 유통단계검사 시행 방안

정부는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에도 불구하고 유통단계검사(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단일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단계검사는 소비자보호 및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유한 단속기능이므로 동 검사업무의 효율적·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일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통단계검사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전국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행태의 불일치로 국민들의 불만 야기 및 검사업무의 공신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각 검사기관별 단속검사의 경험 및 능력, 시설·장비 등의 차이로 위반행위 적발실적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검사기관간의 경쟁에 따른 과도한 단속검사로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검사수수료 수입의 확대를 목적으로 출하단계 검사신청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자의 석유제품에 대한 유통단계 검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 석유사업자와의 유착의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유통단계검사는 단일기관이 수행토록 할 방침이나, 현행 법체계상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한 유통단계검사를 법률에서 바로 단일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등록 및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검사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특정기관에 위탁하기는 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시행령에서 검사업무 위탁기관을 규정하거나, 법령상에는 복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개 기관에게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 및 자체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유통검사업무 시행방안 강구

품질검사체제의 개편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출하전 검사업무의 담당기관이 복수화되고 유통단계검사는 단일기관이 수행할 경우, 유통검사기관은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충분한 유통검사 소요비용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등의 단속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의 품질검사체제에서는 단일기관(석유품질검사소)이 출하전 검사와 유통단계검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출하전 검사에서 징수된 수수료로 유통검사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 정유사 등의 자체검사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자체검사가 늘어날 경우 전체 수수료수입이 감소하여 유통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조달이 곤란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출하전 검사만 담당하고 유통검사업무를 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실제 검사소요비용에 비해 과다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유통단계검사는 석유제품 품질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교통세 등 석유류 세금의 인상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단계검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품질검사체제가 변화된 상황에서도 유통단계검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비용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유통단계검사 위탁기관과 출하전 검사만 담당하는 기관간의 수수료 수입 및 검사비용의 불균형 해소와 유통검사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각 검사기관이 징수한 수수료 수입을 실제 검사소요비용에

기초하여 정산하고, 초과징수된 수수료는 유통검사 위탁기관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징수된 수수료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의 정산 등의 절차는 추후 고시 등을 통하여 정할 계획이다.

자체검사의 증가로 수수료 수입자체가 크게 감소할 경우에는 유통검사비용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상 석유품질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정부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에특회계를 통하여 지원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정부는 개편된 품질검사체제의 시행 첫해인 2000년에는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약 2000년중에 예산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5. 맺음말

이번에 개정되는 석유사업법은 하위법령의 개정을 거쳐 2000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의 제도개편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체제가 당장에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편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품질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석유사업자들도 이러한 제도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품질검사기관은 물론, 정유사, 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 석유산업 관계자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품질관리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품질검사기관은 단순히 국가업무를 위탁수행한다는 관료적 자세에서 벗어나 검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